

인천지방법원 2022. 12. 21 선고 2022가단1070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12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. 8. 24. 접수 제602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고범진

별지